제341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8. 30.(수)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341
발의일자	2023. 8. 17.
회부일자	2023. 8. 2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중찬)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윤종호 의원 외 21명

2. 제정이유

○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경제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제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선도학교 지정, 교원연수 지원,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4. 관련법령

○ 「경제교육지원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6. 관련부서 협의

가. 규제심사: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부패영향평가: 부패 유발요인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해당부서의견: 의견없음
마. 예산조치: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수반 요인 없음

7. 검토의견

가. 제안취지

○ 본 조례안은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필요한 경제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경제교육”, “학교”, “학생”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3조는 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경제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책무로 규정함

○ 안 제4조는 경제교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경제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 · 보급에 관한 사항, 교원의 경제교육 역량강화 방안 등을 포함할 것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는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교육 선도학교를 지정 · 운영하고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는 경제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과 관련된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는 경제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9조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경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갖춘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 한편, 학생들의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초 · 중 · 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정하여 금융과 의사결정, 수입과 지출

관리,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 위험관리와 보험 등 5개 대영역으로 표준안을 개발하였고 초·중·고 수준별로 표준 교재를 개발하여 학생의 발달단계와 생활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인 금융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음.

○ 20·30세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와 불법 고금리 소액 대출의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